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4306

제안연월일: 2024. 9. .

제 안 자 : 여성가족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201138	이해식 의원	2024. 6. 28.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4.9.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 론 및 소위회부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4.9.9.) 상정· 심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202468	전진숙 의원	2024. 8. 1.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9.6.)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4.9.9.) 상정· 심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203276	서지영 의원	2024. 8. 28.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9.6.)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4.9.9.) 상정· 심사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203301	이인선 의원	2024. 8. 28.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9.6.)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4.9.9.) 상정· 심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203393	이인선 의원	2024. 8. 29.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9.6.)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4.9.9.) 상정· 심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203436	김남희 의원	2024. 8. 30.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9.6.)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4.9.9.) 상정· 심사

- 나.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 9. 19.)는 위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다.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2024. 9. 23.)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6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 제7조의3에 따르면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자 등은 국가에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는 촬영물등의 삭제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가 삭제지원 비용을 지출한 경우 촬영물등 관련 범죄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현재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46조의2제5 항제7호에 따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고, 서울 및 경기 등 지역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를 직접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기준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14개소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지원, 초기 긴급삭제 지원,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N번방 사태'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 등으로 촉발된 디지털 성범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기관은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가 유일해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엔 한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업무 수행을 통해 삭제지원의 접근성과 신속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또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18년 4월 개소한 날부터 2024년 6월까지 1,076,925건의 삭제지원을 하였으 나 구상권 청구 사례가 전무하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개정안은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이 급속히 확산되고, 인터넷의 속성상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등의 책 무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명시하 고,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며, 삭제지 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법에 명시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와 같이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및 종사자의 보수교육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사업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명시함(안 제3조제1항제8호 신설).
- 나.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삭제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며,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3).
- 다.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4 신설).

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및 종사자의 보수교육 등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4조, 제25 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1항, 제33조).

법률 제 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를 "(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로, "촬영물등의 대상자"를 "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에서 같다"로, "촬영물등의 삭제"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삭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촬영물등의 삭제"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로 하며, 같은 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촬영물등의 각제"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 중 "촬영물등과"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촬영물등"을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촬영물등"을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촬영물등"을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을 "그 밖에 제1항"으로, "촬영물등"을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로 한다.

- 이 경우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은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의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운영) ① 국가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 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둔다.
 - ②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긴급상담과 불법촬영물등·신상정 보 삭제지원
 - 2.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연구ㆍ홍보
 - 3.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 4.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국내외 협 럭체계 구축·교류
 - 5. 불법촬영물등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 스템 구축·운영
 - 6. 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 7. 그 밖에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 ③ 시·도지사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에 대한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

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 치도에 둘 수 있다.

-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
- 2.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
- 3.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 4.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 ④ 시·도지사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있다.
- 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이라 한다)의 설치 · 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지원센터의 장"을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를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를 "보호시설, 통합지원센

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으로 한다.

제24조 중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를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으로, "제11조"를 "제7조의4, 제11조"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를 각각 "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를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를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으로한다.

제30조 중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를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으로 한다.

제31조 중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를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통합지원센터"를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으로 한다.

제33조 중 "교육훈련시설이"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교육훈련시설이"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성폭력"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성폭력"을 "성폭력"으로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4의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 권진흥원의 조직으로 운영 중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제7 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 센터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 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 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불법 촬영물등·신상정보의 삭제지 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 복 지원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 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 -----(이하 "불법촬영물등"이 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 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 라 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 ----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말한다.

입은 사람에 대하여 <u>촬영물등</u> 의 <u>삭제</u>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 3.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u>국</u>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u>국가</u>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촬영물등에</u>

이하 이 소 및 제7소의4에서
같다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의 대상
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삭제
,
1. ~ 3. (현행과 같음)
②
<u>국</u>
<u>가와 지방자치단체불법촬영</u>
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u>촬영물등과</u>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에 따른 <u>촬영물등</u>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u>아동·청소년성착취물</u>
- ④ 제1항에 따른 <u>촬영물등</u>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한다.
- ⑤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

- <u>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에</u> -
•
H미의사미트 미 기기기기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u>와</u>
1
불법촬영물등 및 신
<u> 상정보</u>
2
아돗·첫수녀섯착취물 및
<u>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u> 시사저ㅂ
<u>신상정보</u>
<u>신상정보</u> ④ <u>불법촬영물등</u>
<u>신상정보</u>
<u>신상정보</u> ④ <u>불법촬영물등</u>
<u>신상정보</u> ④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u>신상정보</u> ④ <u>불법촬영물등</u>

물등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불법촬영물등 및 신
<u> 상정보</u>
<u>이 경우</u>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
은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
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히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
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
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 저
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
성인권진흥원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u>촬</u>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방법, 제3항 후단에 따른 자료 보관의 방법·기간 및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u>수 있다.</u>
<u>⑧</u> 그 밖에 제1항
<u>불법촬영물등 및 신</u>
<u> 상정보</u>

제7조의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 자지원센터등의 설치·운영)
① 국가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보호·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둔다.

- ②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 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

 수・긴급상담과 불법촬영물

 등・신상정보 삭제지원

- 2.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

 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 3.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

 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 4.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 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 5. 불법촬영물등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6. 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 7.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신상 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 ③ 시·도지사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에 대한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

해자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 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 도에 둘 수 있다.

-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 수·상담 및 사후관리
- 2.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
- 3. 불법촬영물등 · 신상정보 삭 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 · 홍보
- 4. 그 밖에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신상

 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 ④ 시·도지사는 지역디지털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 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 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 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 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 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지 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이 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제4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상담소, 보호시 설 및 <u>통합지원센터의 장</u>, 상담 원 또는 그 밖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 4. (생 략)

②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 원센터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 추어야 한다.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여성 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담소, <u>보호시설 및 통합지원</u> 센터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24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상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
<u>다.</u>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①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중
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장,
1. ~ 4. (현행과 같음)
②보호시설, 통합지
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
해자지원센터등
<u>,</u>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
원센터등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담소, <u>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u> 턴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 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u>제11조</u>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 등을 할 수 없다.

제25조(상담소·보호시설 및 통합 지원센터의 평가) ① 여성가족 부장관은 상담소·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3 년마다 평가하고, 시설의 감독 및 지원 등에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6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 또 전 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보 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생 략)② (현행과 같음)제27조(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제27조(성폭력 전담의료기관지정 등) ① (생 략)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
	<u> 원센터등</u>
	<u>제7조의4, 제11조</u>
ᅦ	25조(상담소· <u>보호시설·통합지</u>
	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
	해자지원센터등의 평가) ①
	<u>보호시설 ·</u>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② (현행과 같음)
4]	26조(경비의 보조) ①
	<u></u> 보
	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
	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u> </u>
	② (현행과 같음)
ᅦ	27조(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기거 다 () () () 기기 가이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 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 지 원을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 ⑤ (생 략)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상담 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 <u>터</u>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경찰관서의 협조)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피해자등을 긴급히 구조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 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2)
-	
-	
<u>-</u>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
1	<u> 터등</u>
-	
-	
]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	30조(비밀 엄수의 의무)
-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
]	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
<u>_</u>	원센터등
-	
-	
_	
제:	31조(경찰관서의 협조)
<u>-</u>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
1	터등
_	
-	
_	
_	
_	

따라야 한다.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여성 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통 합지원센터 또는 교육훈련시설 의 장에게 해당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 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 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3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u>성폭력피해 자통합지원센터, 성폭력</u>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2	조(보고 및 검사 등) ①
	<u>통</u>
합	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
	해자지원센터등
	<u> </u>
2	· ③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제33 	·③ (현행과 같음) 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3 	·③ (현행과 같음) 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u>중앙디지털성범</u>
제33 	·③ (현행과 같음) 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3 <u>-</u> <u>최</u>	·③ (현행과 같음) 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u>중앙디지털성범</u>
제33 <u>-</u> <u>최</u>	·③ (현행과 같음) 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u>중앙디지털성범</u> 피해자지원센터등, 교육훈련
제33 <u>죄</u> <u>시</u>	·③ (현행과 같음) 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u>중앙디지털성범</u> 피해자지원센터등, 교육훈련 설이
제33 <u>죄</u> 시 폭	·③ (현행과 같음) 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3 죄 시 폭 디	·③ (현행과 같음) 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3 죄 시 폭 디	·③ (현행과 같음) 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3 죄 시 폭 디	·③ (현행과 같음) 조(유사명칭 사용 금지)